



제439회국회(정기회)
제1차보건복지위원회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■ 강대식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0001호)

2026. 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상지원

목 차

I . 개요	1
II . 주요 내용별 검토	3
1.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	3

I. 개요

1.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(의안번호 제20001호)

가. 제안경위

- (1) 제 안 자 : 강대식의원 등 10인
- (2) 제 안 일 : 2026. 7. 16.
- (3) 회 부 일 : 2026. 7. 23.

나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선은 도서지역의 경우 유일한 지역 보건의료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훈령인 「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」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을 뿐, 법률에는 병원선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실정임.

이에 「지역보건법」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, 병원선 또한 보건소,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같이 요양기관에 포함시킴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제4호).

다.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강대식위원이 대표발의한 「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002호) 및 「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2000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II. 주요 내용별 검토

1.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

가. 개정안의 내용

□ 개정안은 병원선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제1항제4호).

현행	개정안
제42조(요양기관) ① 요양급여(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.	제42조(요양기관) ①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· <u>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</u>	4. ----- ----- <u>보건의료원·보건지소</u> 및 <u>병원선</u>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※ 시행일: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

나. 검토의견

□ 병원선은 병원이 없는 섬이나 해안 또는 해상에서 부상자나 해난

(海難) 사고 발생 시 인명구호를 목적으로 의료시설과 의료에 종사할 인원을 배치한 선박을 말함.

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부터 도서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선을 건조하였고, 현재 「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」(보건복지부 훈령) 및 「경상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」, 「웅진군 병원선 운영 조례」 등 4개 조례에 따라 인천·충남·전남광주(2) 및 경남에서 총 5척의 병원선을 운영하고 있음.

< 2025년 병원선 운영 현황 >

(단위 : 개, 명, 회)

병원선	도서 수	주민 수	이용 횟수	인력 현황		
				의료진	선박직	기타
인천웅진군 건강웅진호	17	19,425	5,067	6	7	1
충남병원선 501호	32	3,221	9,612	9	8	3
전남병원선 511호	77	3,974	11,937	8	7	1
전남병원선 512호	90	5,067	13,438	7	6	1
경남병원선	41	2,379	11,492	6	7	1

자료 : 보건복지부

□ 현재 병원선은 도서지역 주민에 대하여 환자진료,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방역활동, 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, 현재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하고 있음¹⁾.

□ 그런데, 현재 병원선에 대하여는 법률²⁾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

1) 「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」 제9조(진료비)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이 행한 진료비용은 무료로 한다.

2)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시행령 제6조의2에서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시설로 ‘병원선’을 명시하고 있을 뿐임.

고 있지 아니하며, 앞서 살펴보았듯이 보건복지부 훈령인 「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」과 병원선을 운영하는 4개 지자체 각각의 「병원선 운영 조례」에서 규정하고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「지역보건법」에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병원선을 요양기관에 포함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이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음.

- 참고로, 병원선을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시키는 「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9304호 김태호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20002호 강대식의원 대표발의)이 발의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,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포함될 경우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(제16조)³⁾, 시설 및 장비 기준(제17조)⁴⁾, 설치·운영비 보조(제24조)⁵⁾ 등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음.

-
- 3) 「지역보건법」 제16조(전문인력의 적정 배치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에는 기관의 장과 해당 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면허·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(이하 “전문인력”이라 한다)을 두어야 한다.
- ②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 간에 전문인력의 교류를 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(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)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치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, 그 배치 및 운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배치 및 임용자격 기준과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·기간·평가 및 그 결과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4) 「지역보건법」 제17조(지역보건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 등)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.
-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지역주민이 지역보건의료기관을 쉽게 알아볼 수 있고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.
- 5) 「지역보건법」 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 국가와 시·도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설치비와 부대비에 있어서는 그 3분의 2 이내로 하고, 운영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에 있어서는 그 2분의 1 이내로 한다.

□ 다만, 개정안에 따라 병원선을 요양기관화하려는 경우, 병원선이 요양기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시설, 장비 및 의료인력 기준 등⁶⁾이 선행적으로 마련되고 이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

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병원선에서의 진료행위에 대해 요양급여화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담이 발생할 것인데 도서지역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한 본인부담 수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아울러, 동 개정안은 「지역보건법」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데,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타 입법례에서 선박을 기관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, 병원선의 기능이 제한적인 점, 지역보건의료기관은 '시·군·구' 단위로 운영되지만 병원선은 '시·도' 단위로 운영되는 점,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「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」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므로 그 논의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6) 「의료법」 제36조(준수사항)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.

1.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
2.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
4. 고가의료장비의 설치·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제34조(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) 법 제36조제1호 및 제14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고, 그 시설규격은 별표 4와 같다.

참고. 「의료법 시행규칙」 [별표3]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(제34조 관련)

다.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

□ 보건복지부

- 개정안은 병원선을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요양기관에 포함하여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,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.
- 다만, 개정 전제인 병원선을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편입하는 「지역보건법」 개정에 대해서도 법체계상 선박 자체를 독립된 기관으로 규정한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, 병원선은 도서지역을 순회하며 진료를 제공하는 이동형 의료수단으로, 특정 지역에 고정 설치된 보건소 등 기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설치 형태·기능·운영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, 병원선은 주로 시·도 등 광역 단위로 운영되고 있어 시·군·구 중심으로 구축된 현행 지역보건의료체계와 관할·운영 주체 등 정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.
- 아울러, 향후 병원선이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되더라도, 요양기관 편입을 위해서는 무료진료 원칙과 건강보험 본인부담 간 관계,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간 역할 분담, 요양기관 지정·관리 기준 등 구체적 운영방안을 우선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□ 국민건강보험공단

- 병원선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포함함으로써 의료 접근성이 낮은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하나,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
- 병원선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과 관계없이 안정적 운영하기 위해 요양기관으로 규정하려면, 「지역보건법」에 병원선을 ‘지역보건의료기관’에 포함시키고, 동법 시행규칙에 요양기관에 맞는 시설·장비 및 표시기준 및 적절한 전문인력 배치 기준에 대한 정립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.
- 한편, 현재 병원선에서 이루어지는 진료는 무료⁷⁾이지만 병원선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수진자에게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바, 다른 요양기관과의 관계에서 적정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의협, 병협 등 이해관계자 및 가입자 등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함
- 아울러, 현재 도서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이용 곤란을 이유로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는데, 병원선을 통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의 지속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

문 의 처

02)6788-5503

7) 「병원선 및 폐속후송선 관리 운영 규정」 제9조(진료비)

참고

「의료법 시행규칙」 [별표3]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(제34조 관련)

■ 의료법 시행규칙 [별표 3] <개정 2024. 7. 24.>

의료기관의 종류별 시설기준(제34조 관련)

시설	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	치과병원	한방병원	의원	치과 의원	한의원	조산원
1. 입원실	입원환자 100명 이상(병원·요양병원의 경우는 30명 이상)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		입원환자 3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	입원실을 두는 경우 입원환자 29명 이하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	의원과 같음	의원과 같음	1 (분만실 겸용)
1의2. 임종실	1 (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과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만 해당한다)						
2. 중환자실	1 (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만 해당한다)						
3. 수술실	1 (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종합병원이나 병원인 경우에만 갖춘다)	1 (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외과계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,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, 전신마취하에 수술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)		
4. 응급실	1 (병원·요양병원의 경우는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받은 경우에만 갖춘다)						
5. 임상 검사실	1 (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	1 (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			
6. 방사선 장치	1 (요양병원의 경우 관련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	1 (관련 의과 또는 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			

7. 회복실	1 (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수술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	
8. 물리 치료실	1 (종합병원에만 갖춘다)						
9. 한방 요법실	1 (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이 있는 경우에만 갖춘다)	1				
10. 병리 해부실	1 (종합병원에만 갖춘다)						
11. 조제실	1 (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조제실을 두는 경우에만 갖춘다)
11의2. 탕전실	1 (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관련 한의과 진료과목을 두고 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)	1 (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)			1 (탕전을 하는 경우에만 갖춘다)	
12. 의무 기록실	1	1	1				
13. 소독시설	1	1	1	1 (외래환자를 진료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제외한다)	1	1	1
14. 급식시설	1 (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)	1 (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)	1 (외부 용역업체에 급식을 맡기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)				
15. 세탁물 처리시설	1 (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)	1 (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)	1 (세탁물 전량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)				

		는 갖추지 아니 하여 도 된다)	는 갖추지 아니 하여 도 된다)				
16. 시체실	1 (종합병원만 갖춘다. 다만,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로서 장례식장에 시 신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둔 경우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)						
17. 의료폐기 물 처리시 설	1 (의료폐기물 전량 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)	1 (의료폐기 물 전량을 위 탁 처 리 하는 경우 에는 해당 하지 않는 다)	1 (의료폐기 물 전량을 위 탁 처 리 하는 경우 에는 해당 하지 않는 다)				
18. 자가발전 시설	1	1	1				
19. 구급자동차	1 (요양병원은 제외 하며, 「응급의료 에 관한 법률」 제 44조제2항에 따라 구급자동차의 운용 을 위탁한 경우에 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)						
20. 그 밖의 시설	가. 탕전실, 의무기록실, 급식시설, 세탁처리시설 및 적출물소각시설은 의료기관이 공 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. 나. 요양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당, 휴게 실, 욕실, 화장실, 복도 및 계단과 엘리베이터(계단과 엘리베이터는 2층 이상인 건물 만 해당하고, 층간 경사로를 갖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)를 갖추어야 한다. 다. 탕전실은 의료기관에서 분리하여 따로 설치할 수 있다. 라. 종합병원, 병원, 한방병원, 요양병원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 련 편의를 위하여 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장례식장의 운영은 법인,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.						